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8. 19.(수) ~ 2026. 08. 25.(화)(공휴일 포함 7일이상)

2. 사업내역(사업명 : 화성동탄(1) M1-1-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1) M1-1-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성 채 현 다. 설 계 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건 규 라. 시 공 자 :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 치 영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5번지 ○ 대지면적 : 18,617.10㎡(실사용 대지면적 : 17,725.20㎡) ○ 연 면 적 : 233,059.8402㎡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지하7층~지상49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 812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6.08.01. ~ 2031.01.31.(54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7.10.01. ~ 2031.01.31.(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6. 06. 23. ※ 상기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301,839,279천원 ○ 대 지 비 : 261,951,767천원 ○ 총공사비 : 593,468,575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전기 감리대상 공사비 : 42,105,117천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타법 감리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비 : 551,363,458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 대상공사비는 건축, 소방,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기준 : 1,336,5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296,470,00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원원단위 미만 절사 ※ 공사감리용역대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 복수예비가격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 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 금액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고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체공정																														26.08.01 ~ 31.01.31 (54개월)
토목공사																														26.08.01~28.12.31 (29개월) 30.04.01~31.01.31 (10개월)
구조체공사																														27.10.01 ~ 30.03.31 (30개월)
건축공사																														26.08.01 ~ 31.01.31 (54개월)
기계설비공사																														27.10.01~31.01.31 (40개월)
전기설비공사																														27.10.01~31.01.31 (40개월)
통신/소방공사																														27.10.01~31.01.31 (40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일시 : 2026. 08. 26.(수) 10:00 ~ 2026. 08. 28.(금) 12:00

나. 전자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실격 처리됨)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②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④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 ⑥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⑦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⑧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개찰 일시

가. 일 시 : 2026. 08. 28. (금) 14:00 이후 (입찰진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용

다. 유의사항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써,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가 확정됨.
- ②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임.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 입찰가격 비율을 말하며, 세부평가기준 <참고자료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화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08. 31.(월) 09:00 ~ 2026. 09. 02.(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09. 03.(목) 09:00 ~ 2026. 09. 07.(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4층)

- 다. 내 용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 7호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자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열람 서류의 사진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25.42%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2.39%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전기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9.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

-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라. 지역가점 : 당사업장은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 아님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4) 서약서(별첨4)(인감날인)
-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3)
- 6)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하며,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A4상철로 1부제출)

-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7) 업무중첨도 관련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9) 작업계획 및 기법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서약서

11)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2)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용이(容易)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3)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4)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사본,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발정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 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 [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기 요망]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소계산 : 상향조정하지 않음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등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마.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무효로 함.

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라.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마.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마.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시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사.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자.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차.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가 감리자로 지정됨.
-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타.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파.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 하.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 용	수행계획	적 합		부 적 합			-
		배치계획	적 합		부 적 합			-
		쪽 수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표지및간지 제외)						-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 용	문 제 점	적 합		부 적 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3쪽 내외	2쪽 미만	-			-
(표지및간지 제외)						-		

-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 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따름,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1) M1-1-2블록과 M1-2-2블록 간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중복접수를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 031-5189-3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 첨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 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 책임감리원가 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 교체빈도·부 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신청인 (인)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 한,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 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 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 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별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 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14 -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예비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경자																																		
가. 참여감리원			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가) 등 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5)	○ 배점기준																																									
	<table><tr><td colspan="2">규 모</td><td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d></td></tr><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d></td></tr><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td><td></td></tr><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d></td></tr></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d>규 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tr><td>년 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table>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2) 보 조 감리원 (가) 등 급	(나) 경 력 및 실 적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14)	○ 배점기준																																									
	<table><tr><td colspan="2">규 모</td><td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 rowspan="2">800세대 이상 1,200세대미만</td><td>3년 이상</td><td colspan="2">3년 미만 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tr><td>14</td><td colspan="2">12</td><td colspan="2">10</td></tr><tr><td>1,200세대이상</td><td>6년 이상</td><td>6년 미만 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 colspan="2">4년 미만</td></tr><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 colspan="2">8</td></tr></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 이상 1,200세대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14	12	10	8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 이상 1,200세대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3) 비상주 감리원 (가) 등 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나) 경 력 및 실 적	(9)	○ 배점기준 <table border="1"><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7년 이상</td><td>7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td></tr><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table>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9	7	5	3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9	7	5	3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 border="1"><tr><td>구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영업정지 (가) 감리 업체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참여 감리원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 비율	[3]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 만 50%이 상</td><td>50%미 만 25%이 상</td><td>25%미 만</td></tr><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 만 50%이 상	50%미 만 25%이 상	25%미 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 만 50%이 상	50%미 만 25%이 상	25%미 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100%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 만 50%이 상</td><td>50%미 만 25%이 상</td><td>25%미 만</td></tr><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 만 50%이 상	50%미 만 25%이 상	25%미 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 만 50%이 상	50%미 만 25%이 상	25%미 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table><tr><td>구 분</td><td>5년 이하</td><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r><td>전력신기술</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중첩도	(1) 상주 감리원	[10] (6)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4</td><td>2</td></tr></table>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구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2) 비상주 감리원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 업무중첩도는 사·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빈도	(1) 감리 업체	[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 체 빈 도 (%)</td><td>10%미만</td><td>10%이 상 20%미만</td><td>20%이 상 30%미만</td><td>30%이 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 상 20%미만	20%이 상 30%미만	30%이 상	점 수	2.5	2	1.5	0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 상 20%미만	20%이 상 30%미만	30%이 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 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구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사·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5] (3)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기법	(2)	○ 당해 공사감리구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1.5] [1.0] [-5]	세부평가방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가점	(1) 지 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 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구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사 업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W)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존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인) 화성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 업체에 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 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예비순위 5개 업체에 한함)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합 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합 계				예 비 순 위 5 개 업체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예비순위 5개 업체에 한함)

[illegible]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원 배치 계획표 (예시)

○ 용역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 20 . . (개월간)

[illegible]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당해 감리업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가. 업무처리 단계

① 개인회원 가입 ⇒ ② 등록신청 ⇒ ③ 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 ④ 조달청 승인

나.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구분	세부 절차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페이)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 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2단계	개인회원 가입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3단계	등록 신청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② 정보입력 분야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 SW개발, 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눔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5단계	조달청 승인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 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이상 ~ 800세대 미만	30	70	$\text{평점} = 7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55	82.95%
800세대 이상 ~ 1,200세대 미만	50	50	$\text{평점} = 5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text{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15	72.95%